

장애인활동지원 사업-활동지원급여

1 기본 현황

사업개요

회 계	일반회계		
사업기간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연례반복		
사업내용	○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 ○ 중증장애인에 순회돌보미 파견으로 야간 돌봄 서비스 제공		
사업비 (당해년도)	220,625,555천원	(국비)110,016,000천원	(시비)110,609,555천원
	기타 (예산 외) (구비)30,890,903천원 (기타)		

사업 담당자

실·국	부서명	과 장	팀장	주무관
복지본부	장애인자립지원과	안찬율 2133-7470	김지형 2133-7472	차영선 2133-7473

2 예산 설명

예산 총괄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17예산액 (A)	2018예산액 (B)	증감 (B-A)	(B-A)*100/A
계	(x96,245,663) 191,480,230	(x110,016,000) 220,625,555	(x13,770,337) 29,145,325	(x14) 15
사무관리비	(x-) 750	(x-) 750	(x-) 0	(x-) 0
시책추진업무추진비	(x-) 3,900	(x-) 4,900	(x-) 1,000	(x-) 25
사회복지사업보조	(x-) 30,000	(x-) 0	(x-) △30,000	(x-) △100
자치단체경상보조금	(x96,245,663) 191,445,580	(x110,016,000) 220,586,905	(x13,770,337) 29,141,325	(x14) 15
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	(x-) 0	(x-) 33,000	(x-) 33,000	(x-) 0

□ 산출근거

과목구분	2018년 예산내역	
사무관리비	○ 사무관리비 750,000원	= 750천원
시책추진업무추진비	○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,900,000원	= 4,900천원
자치단체경상보조금	○ 국고보조사업 189,141,097,000원	= 189,141,097천원
	○ 시비추가사업	= 29,168,208천원
	- 350시간 장애인 활동지원 4,519,200,000원	= 4,519,200천원
	- 200시간 장애인 활동지원 4,390,080,000원	= 4,390,080천원
	- 120시간 장애인 활동지원 1,239,552,000원	= 1,239,552천원
	- 100시간 장애인 활동지원 18,851,520,000원	= 18,851,520천원
	- 장애1급(인정점수 200~220점) 10명*40시간*10,760원*12월	= 51,648천원
	- 시설 퇴소자 30명*30시간*10,760원*12월	= 116,208천원
	○ 중증장애인 야간 순회방문서비스	= 2,277,600천원
- 인건비	= 1,743,000천원	

과목구분	2018년 예산내역	
	1,743,000,000원	
	- 퇴직금, 4대보험 309,600,000원	= 309,600천원
	- 운영비 225,000,000원	= 225,000천원
공기관등에대한경상 적위탁사업비	○ 시비추가 전자바우처시스템 운영관리비 33,000,000원	= 33,000천원

3 사업설명

□ 사업목적

-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고,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
-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야간 순회방문서비스 시행하여 야간 돌봄 공백을 방지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24시간 안전을 확보

□ 사업근거

- 법령상 근거
 - 장애인복지법 제9조(국가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, 제53조(자립생활지원)
 -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
 -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제2조

□ 사업내용

- 장애인활동지원사업
 - 지원대상 : 만 6~65세 미만의 1~3급 장애인
 - 사업기간 : 2018. 1월 ~ 2018. 12월
 - 지원시간 : 월 40~742시간(국고 40~392시간, 시비 40~350시간)
 - 서비스 내용 : 활동보조, 방문목욕, 방문간호 서비스
 - 지원체계 : 활동지원기관을 통한 활동보조인 등 파견(바우처 제공)
- 야간 순회방문서비스 사업
 - 대상 : 최중증 독거 및 준독거 장애인
 - 정의 : 신체적 장애로 인해 야간 돌봄이 필요한 자에게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 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필요한 서비스 제공

- 사업기간 : 2018. 1월 ~ 2018. 12월
- 서비스 내용 : 개인위생관리, 신체기능 유지증진, 섭식기능 유지증진, 안전확인

□ **추진경위**

- '06.11월 : 장애인활동보조 서울시 시범사업
- '07.05월 : 장애인활동보조 국가사업 전국 시행
- '07.09월 : 장애인활동보조 서울시 추가지원 시행
- '11.10월 : 장애인활동보조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변경, 확대 시행
- '13.01월 :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격 확대(장애1급 → 장애1~2급)
- '14.03월 : 최종증 독거장애인 지원시간 확대(180→200시간)
- '15.02월 : 최종증 독거장애인 24시간 지원 실시(100명 시범실시)
- '15.06월 :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격 확대(장애1~2급→장애1~3급)
- '16.05월 : 야간 순회방문서비스 사업 시행

□ **2018년도 추진일정**

(단위 : 천원)

사업추진절차	추진기간	예산집행금액	추진세부내용
계		220,625,555	
사업계획 수립	2018.01~2018.02		활동지원서비스 사업계획 수립
사업비 교부	2018.01~2018.12	220,625,555	활동지원서비스 사업비 교부
서비스 제공기관 점검	2018.01~2018.12		서비스 제공기관 점검

4 사업 효과

□ **최근 3년 추진실적**

2015년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최종증 독거장애인 24시간 지원 실시(100명 시범) : '15.2월 ○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격 확대(장애1~2급→장애1~3급) : '15.6월 ○ 지원인원 : 168,619명(연인원)
2016년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야간 순회방문서비스 사업 시행 : '16.5월 ○ 지원인원 : 182,204명(연인원)
2017년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원인원 (9월 기준) : 144,178명

□ 향후 기대효과

- 최중증 독거장애인에 대한 급여량 확대에 의한 야간 응급상황 시 위기대응 능력 향상
- 장애인의 일상 및 사회생활 지원을 통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

5 최근 3년 결산 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도	당초예산	전년이월	예산변경	예산현액	집행액	차년이월	집행잔액
2014	(x69,754,660) 137,306,240	(x- 0	(x- 1,589,175	(x69,754,660) 138,895,415	(x68,391,821) 136,786,488	(x- 0	(x1,362,839) 2,108,927
2015	(x74,562,224) 150,062,564	(x- 0	(x- 0	(x74,562,224) 150,062,564	(x74,562,224) 149,868,664	(x- 0	(x- 193,900
2016	(x83,688,265) 168,654,261	(x- 0	(x- 0	(x83,688,265) 168,654,261	(x83,688,265) 168,653,867	(x- 0	(x- 394